
R E P O R T

- 정신보건법 -

| | | |
|------|---------|----|
| 제출일 | | 학부 |
| 과목 | 사회복지법제론 | 학번 |
| 담당교수 | | 이름 |

목 차

1. 의의

- 1) 현대사회의 정신보건문제
- 2) 정신보건법의 특성

2. 입법배경과 연혁

- 1) 입법배경
- 2) 연혁

3. 내용

- 1) 정신보건법의 목적
- 2) 기본이념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 4)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 5) 정신보건전문요원
- 6) 정신보건시설
- 7) 보호 및 치료
- 8) 퇴원의 청구·심사 등
- 9) 권익보호 및 지원 등

「기사 및 참고문헌」

1. 의의

1) 현대사회의 정신보건문제

: 현대사회에서 정신보건문제는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낙오자가 증가하고, 국민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IMF 이래 세계화와 경쟁력 확보라는 사회적 분위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 정신보건법의 특성

- (1)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속하는 법이다.
- (2) 정신질환은 산업화·도시화와 같은 사회적 발달과 함께 생겨나는 부산물로 이해돼 사회복지서비스법 중에서도 최근에 발전되는 특성을 지닌다.
- (3) 급여형태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 (4) 전적으로 대인적 서비스에 의존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를 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간 격리수용하는 방법에 의존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정신질환자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985년 정신보건법이 국회에 제안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그 후 정신보건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수정, 보완하여 1992년도에 정신보건법안을 국회에 제출, 1995년 12월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7년 1월부터 정식으로 법안이 시행되었다.

2) 연혁

| | |
|--------------|------------------|
| 1985. |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 폐기 |
| 1992. |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 |
| 1995. 12. 30 | 정신보건법 제정 |
| 1997. 1 | 정신보건법 시행 |
| 1997. 12. 31 | 전문개정 |
| 2000. 1. 12 | 일부개정 |
| 2004. 1. 28 | 일부개정 |
| 2008. 3. 21 | 일부개정 |
| 2013. 8. 13 | 일부개정 |

(1) 1995. 12. 30 정신보건법 제정

◇제정이유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②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지역내의 정신병원 또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과를 지정·활용하게 함으로써 보건소와 함께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내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③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로 구분하고,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④ 정신요양병원·사회복귀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되도록 함.
- ⑥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자의입원, 동의입원, 평가입원, 시·도지사예 의한 입원 및 응급입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입원요건과 절차를 규정함.
- ⑦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에 대하여 부당여부의 심사와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 심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⑧ 정신과전문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원은 금지하고, 전기충격료법등의 특수치료는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하도록 제한하며, 정신질환자의 행동제한의 금지, 격리제한등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둠.
- ⑨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은 법 시행후 7년 이내에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하도록 함.

(2) 1997. 12. 31 전문개정

◇개정이유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여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정신의료기관의 범위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에 대해 정신과전문의가 퇴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보호의무자의 퇴원신청이 없어도 즉시 퇴원시키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

◇주요골자

- ①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로 하고 정신요양병원을 제외하며,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범위를 정신병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과에서 정신과의원까지 확대함 (법 제3조제2호·제3호 및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 ② 종전에는 시·도지사예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만 환자를 일시 퇴원시켜 그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가퇴원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한

전체 15페이지 중 4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정신보건법

저작시기 : 2015-11

등록시기 : 2015-12-04

자료형태 : hwp, pdf

분 류 : 사회과학

출 처 : <https://www.happycampus.com/report-doc/14259348/>

--- 주의 사항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